

#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623호)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05. 12.

고 성 군 수

나. 회 부 일 자 : 2023. 05. 15.

다. 상 정 · 의 결 일 자 : 2023. 06. 02.

기획행정위원회 상정·원안기결

### 2. 개정이유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사항(2023. 3. 2.)을 반영하여 공무원출장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고 영 준용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운임 및 숙박비 등 지급 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준용(안 제3조의2)

나.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 사항 정비(안 제4조제1호)

다. [별표 1] 삭제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무원 여비 규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복지지원과: 성별영향평가

라. 기 타

1) 입법예고: 고성군 공고 제2023-611호

가) 예고기간: 2023. 4. 10. ~ 2023. 5. 1.(21일간)

나) 예고결과: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 5. 본문: 붙임과 같음

## 6. 전문위원 검토요지

### □ 조례 개정의 취지(필요성)

-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으로 공무출장에 따른 공무원 여비가 인상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임.

### □ 주요 내용 검토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에 따라 운임 및 숙박비 등 지급(안 제3조의2)
  - 2023. 3. 2. 개정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 국내 여비 지급표에 따라 숙박비 등을 지급하도록 개정하고, 현행 국내 여비 지급표 [별표1]을 삭제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

(단위: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	25,000

※ 일비 20,000원→25,000원, 식비 20,000원→25,000원,

숙박비(제2호)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원→100,000원, 광역시 60,000원→80,000원,  
그 밖의 지역 50,000원→70,000원

-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사항 정비(안 제4조제1호)
  - 「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의2를 준용하지 않도록 한 현행 규정 중 준용의 필요가 있는 제8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할 수 있도록 정비
  -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 여비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4조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지침에 따라 지급함. 따라서, 「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의2 제5항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에 따른 교육훈련 여비 지급 적용 규정은 준용의 필요성이 없음.
- 조례안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

□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국내 숙박비, 식비, 교통비 인상에 따른 국내여비 지급 기준을 조정한 「공무원 여비 규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국내 공무 출장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위원회 회의록 기재)

8. 토 론 : 없음.

9. 심사결과 : 2023. 6. 2. 원안가결.